



IMO 회의 및 조직 용어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Credential

신임장

신임장이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 국가에 통고하는 문서로서, 국제기구 회의에서 신임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인물이 자국을 대표하는 증명 용도로 쓰임

Secretariat

사무국

사무국은 조직·단체에서 인사, 총무 등의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함.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사무국은 그 설립 목적에 따른 전문부서와 운영 전반(예산, 회계, 감사 등)을 관장하는 지원부서 등으로 구성

사무국의 수장은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이라 지칭하고 기구의 실질적 책임자를 의미함

Assembly

총회

국제기구에서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의제를 토의하고 어떠한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기구(회의)을 지칭함

Council

이사회

국제해사기구(IMO)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 기구지만 매번 요건을 충족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구의 정책 수립, 재정 운영 등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

Secretary-General

사무총장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국제해사기구(IMO) 수장을 의미함. 역대 IMO 사무총장의 명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성 명	국 적	재임 기간
1대	Ove Nielsen	덴마크	1959~1961
2대	William Graham	영국	1961~1963
3대	Jean Roullier	프랑스	1964~1967
4대	Colin Goad	영국	1968~1973
5대	Chandrika Prasad Srivastava	인도	1974~1989
6대	William A. O'Neil	캐나다	1990~2003
7대	Efthimios E. Mitropoulos	그리스	2004~2011
8대	Koji Sekimizu	일본	2012~2015
9대	Lim Ki-tack	대한민국	2016~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Council Reform

이사회 개편

기존 40개국으로 구성된 IMO 이사국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이사국 선출 방법, 선출 주기 및 각 범주(카테고리 A, B, C) 기준 등에 관한 변경을 논의함

Chair / Vice-Chair

의장 / 부의장

회의 진행을 총괄하는 직위를 지칭하며 초기에는 의장을 Chairman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성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man’ 단어는 삭제되고 ‘Chair’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총회 의장은 ‘President’라고 함

〈 의장 영문명칭의 변경 〉



〈 출처: IMO 홈페이지 〉

SMC

고위관리위원회

SMC (Senior Management Committee),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각 부서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임. 기구의 주요 결정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견해를 대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끔. 2020년 2월 SMC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

이름	직책	소속
Mr. Kitack Lim	Secretary-General	
Mr. Lawrence Barchue	Assistant Secretary-General & Director	Department for Member State Audit and Implementation Support
Ms. Heike Deggim	Director	Maritime Safety Division
Mr. Hiroyuki Yamada	Director	Marine Environment Division
Mr. Frederick Kenney	Director	Leg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Division
Mr. Chris Trelawny	Acting Director	Technical Cooperation Division
Ms. Ariane Gireud	Director	Conference Division
Mr. Arsenio Dominguez	Director	Administrative Division and Acting Chief of Staff
Mr. Sung-Jin Kim	Head	Internal Oversight and Ethics Office

〈 출처: IMO 홈페이지 〉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World Maritime Day

세계 해사의 날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9월 마지막 목요일을 'World Maritime Day(세계 해사의 날)'로 지정하여 각 회원국 주요 인사와 함께 국제 해사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International Maritime Prize

국제 해사 상

국제해사기구(IMO) 목적달성을 가장 이바지를 한 개인,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1977년에 신설되었으며 1981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음

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바다의 의인상 대상

'IMO 바다의 의인상'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매년 해상에서 인명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는 2007년부터 회원국 및 관련 국제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중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2011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구출하는 작전(아덴만의 여명)에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석해균 선장이 바다의 의인상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 석해균 선장 바다의 의인상 대상 수상 (2011) 〉



〈 출처: IMO 홈페이지 〉

Certificates of
Commendation in
recognition of their
acts of bravery

바다의 의인상 우수상

Letters of
Commendation in
recognition of their
courageous actions

바다의 의인상 장려상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Day of Seafarer

선원의 날

2010년 STCW 마닐라 회의에서 ‘선원의 날’ 기념일이 신설되었으며, 전 세계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날로 매년 6월 25일에 기념함

IMO Goodwill Maritime Ambassador Scheme

IMO 명예 대사 제도

해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젊은 세대에게 해사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 경험 및 지식 그리고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해 전파·공유하기 위해 2015년 신설한 IMO 차원의 홍보 제도임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전문기구

유엔과 협정을 맺고 제휴·협력하며,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함.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엔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기타 연관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임. 협정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각 전문기구 사이에 체결하여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고, 전문기구들은 독자적인 회원국 제도를 가지며, 입법·행정기구, 사무국 및 자체 예산을 갖는 자율적인 기구임. 현재 15개 전문기구가 있음



Committee

위원회

국제해사기구(IMO)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11조(Organs)에 따라 기구는 5개의 위원회(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간소화위원회)를 둠. 각 위원회는 해운·조선 부문의 전문성을 지니며 소관 협약의 제·개정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함

Working Group

작업반

IMO 회의 의제 중,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관해 회기 중 별도의 작업반(별도 회의실)을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음. 또한 각 회기 중 작업반 개설은 초안작업반을 포함하여 최대 5개로 제한되어 있음

Drafting Group

초안작업반

초안작업반에서는 논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보다, 완성도 있는 결의서 및 협약 제·개정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Sub-Committee

전문위원회

위원회와는 별도로 좀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MSC 및 MEPC 산하에 7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 IMO 회의체 구성 〉



〈 출처: IMO KOREA 홈페이지 〉

Correspondence
Group

통신작업반

정해진 기간의 회기 중에 시간 또는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회기 간 논의를 위해서 통신작업반을 개설할 수 있음. 이는 인터넷 통신수단(E-mail 등)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함

ToR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회기중 작업반, 초안작업반 또는 회기간 통신작업반 등에게 회의 시작 전, ToR을 선정하여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의 범주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

ToR은 통상 ‘위임사항’이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논의 범주를 의미함. ToR를 선정하지 않으면 논의 경과에 따라 기존에 논의 범주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

New Outputs

신규 작업과제

각 IMO 회의(위원회 &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정식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신규 작업과제(New Outputs) 제안을 받으며, 추후 IMO 차원에서 필요성 또는 가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식의제로 해당 회의제에 상정 여부를 결정함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SD
(Strategic Direction)

전략 방향

국제해사기구(IMO)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을 설정하고 이를 회원국에 공표함

SP
(Strategic Plan)

전략계획

설정된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장기적 이행 측면을 고려한 계획임

Terms and
Conditions

이용약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해야만 하는 일종의 규칙을 의미함. IMO 회의에서는 언론 참여(Media Attendance)에 관한 이용약관을 공지하여 밝히고 있음

Note Verbale

구술서

다른 국가와 토의한 기록 또는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의 일종임, 상대국에 질의, 의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됨



FRFR

재정 규정 및 규칙

FRFR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체적으로 재정 규정 및 규칙을 보유하며, 이에 따라 기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내·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회계감사 결과 (Financial Report) 보고서를 발행하여 회원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

PI
(Performance Index)

성과지표

국제해사기구(IMO)는 총회에서 채택된 7개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 1~7)과 관련, 향후 이에 관한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정량적인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40개의 성과지표(PI)를 선정

Plenary

본회의

사전상 의미로써 본회의 또는 전체회의를 지칭함. IMO 회의에서는 본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를 의미하며, 본 회의장 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서는 ‘Plenary’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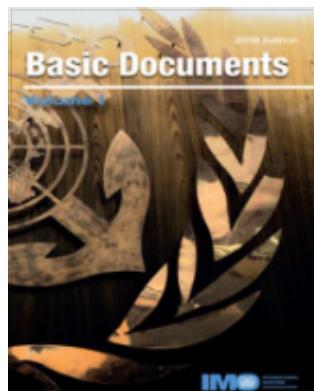
색인

Rules of Procedure

의사규칙

의사규칙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약속으로써, IMO는 총회, 이사회 그리고 위원회의 고유한 회의 의사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의사규칙을 준용함.

필요 시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의사규칙 개정이 가능하며, 의사규칙 통합본은 IMO DOCS 홈페이지 내 ‘Basic Documents’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Contribution

분담금

국제해사기구(IMO)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회원국의 분담금 (Contribution)으로 충당되며, 이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결정됨. 참고로, 만약 회원국이 분담금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음



External Audit

외부감사관

IMO 재정 규정 및 규칙(FRFR)에 따라 총회에서 4년의 임기로 외부감사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Credential Committee

신임장 위원회

IMO 총회 의사규칙 9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게 되면, 사무국은 신임장 위원회(Credential Committee)를 조직하여 이를 검증함. 총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각기 다른 회원국의 5명의 대표가 선임되어 신임장 위원회를 구성

UN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주요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 활동, 군비축소 활동, 국제협력 활동으로 나뉘며, 주요 기구, 보조기구 및 전문기구로 구성됨. 1945년 10월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뉴욕에 있음

AIIC



국제회의통역사협회

AII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1953년 설립, 100개국 이상의 3,000명가량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회의 통역사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관임

ICSC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국제공무원위원회는 1974년 12월 18일 총회 결의 제3357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의 단체임. 본부는 뉴욕에 있음



Statement

성명, 담화문

담화문이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지칭함. 일반적으로 담화문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주무 부처의 장관 등이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며 담화문의 내용은 작성 당시의 주요 현안이나 발표자의 견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



Joint Inspection Unit

합동감사기구

국제기구의 사업계획·채택·실적 평가제도 개선 등 행정·예산 분야의 제반 개혁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임 (홈페이지 : www.unjiu.org)

Work Programme

작업 프로그램

IMO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에 신규 의제로 상정되는 안건으로써, 해당 회의의 목적과 IMO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 가능한 안건을 선정하는 절차

Participants

참석자

IMO 회의에 회원국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대표단 리스트를 정보 문서 형식으로 매회의 공개함. 참석자의 직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

	영문	국문
1	Head of Delegation	수석대표
2	Representatives	대표
3	Alternates	교체대표
4	Advisers	자문가
5	Observer	옵저버



IMO 협약 용어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Treaty

조약

국가 간 맺는 기록관계에서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93)
한·인도 범죄인 인도조약 (2005)

Convention

협약

양자조약에서 특정 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 또한, 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담배규제 기본협약 (2005)
한·요르단 이종과세방지협약 (2005)

Resolution

결의서

국제기구 및 기관이 대내·외적으로 실행하는 어떠한 의사표명의 완성된 문서를 지칭함. 결의서는 성격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권고적 효력을 지님. 단, 다양한 국제기구의 총회 결의서는 국제관습법 성립을 위한 증거가치로 중요한 역할을 함



Covenant / Charter /
Statute

규약 / 헌장 / 규정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UN 헌장,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등

Agreement

협정

국제간 조약의 일종으로 주로 정치적 성격의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사용함. 국제법상 효력 등은 조약과 동일하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합의에 쓰임

예) 한·호주자원협력 협정 (2005)

Protocol

의정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 또는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사용

예) 한·루마니아 경제 과학 기술협력 협정개정 의정서 (2005),
제네바 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1949)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Authentic Text**정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 시 사용된 언어는 일반적으로 조약문 정본으로 포함되며 조약 당사국의 국어 본도 원칙적으로 정본이 됨

Exchange of Notes**교환각서**

조약의 서명 절차를 체결하는 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행정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

예) 한·칠레 사증 면제교환각서 (200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양해각서**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로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

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양해각서(2005)

Annex

부속서

조약문은 크게 제목(title), 전문(preamble), 본문(main par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다시 주된 조문(articles), 최종조항(final clauses), 부속서(annex)로 구성됨. 부속서란 본문과 분리되어 있으나 역시 본문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로서 통상 기술적인 규정 및 보충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조약의 조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조약 본문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거나 그 체제가 산만하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를 부속서로 따로 분리함.

Authentication

인증

조약문이 작성된 다음에 조약문을 채택(adoption)하고 그 조약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끝맺는 절차로서, 임시서명이나 서명의 방식으로 행해짐. 인증된 조약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재교섭을 의미함

Force Majeure

불가항력

협약상 불가항력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하고, 극복 불가능한 상황을 지칭함.

대부분 국제협약 조문에서 불가항력 경우의 협약 적용에 관해 명시함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Special Rules

특별규칙

국제협약의 조문에서 특별규칙 조항을 통해 일부 합의에 따라 특별규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OLAS 경우 특별규칙에 따라 협약 및 코드의 4년 주기 발효 체계를 구축한 바 있음

Ratification

비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지칭함. 비준 의사의 표시는 양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 교환으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짐

Acceptance / Approval

수락 / 승인

수락이나 승인은 주로 다자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의 한 방법으로 조약의 원서명자로서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와 조약의 원서명자가 아닌 국가가 수락이나 승인을 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수락의 조건으로” 또는 “승인의 조건으로” 서명한 후 행하는 전자의 경우는 “비준” 그리고 해당 조약채택 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이나 승인은 “가입”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지님

Accession

가입

다자조약의 원 서명국이 아닌 국가가 추후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조약상의 규정(가입)에 따라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

Entry into force

발효

발효란 합의된 조약이 실제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함. 다자조약에 있어서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발효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Reservation

유보

다자조약 체결 시(서명·비준·가입·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선언으로, 그 조약 내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력을 자국에 대하여 배제,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

Invalidity

무효

조약의 무효란 조약체결에 있어 국제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함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Deposition

기탁

다자조약에 있어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입·비준·수락·승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써,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 국가 사이의 비준서 등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depositary)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김

Registration

등록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조약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둠으로써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UN 헌장 제102 조는 모든 조약을 UN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함

UN 헌장 제102조

- | | |
|----|---|
| 1. | 이 헌장이 발효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 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
| 2. |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

Amendment

개정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규정을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조약에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체결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개정됨

Denunciation and Withdrawal

폐기 및 탈퇴

조약의 당사자들이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서, ‘폐기’는 양자조약에서 사용되며 ‘탈퇴’는 다자조약에서 사용됨

Circular

회람문서

비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IMO가 합의한 각종 지침서와 회원국이 주지할 필요가 있는 다른 회원국의 정책 사항에 대한 문서를 지칭

Circular Letter

회람장

IMO 차원에서 회원국에 알리는 행사 개최 등의 단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Circular Letter 문서를 발행함



일반용어

MSC

MEPC

LEG

TC

FAL

CCC

HTW

III

NCSR

SDC

SSE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색인

Explicit acceptance

명시적 수락

통상 협약의 수락 절차는 명시적(Explicit) 수락과 묵시적(Tacit) 수락으로 나뉘며, 명시적 수락은 협약의 개정 사항 채택 이후 정해진 별도 수락 기간이 없고 분명한 수락 의사를 밝히는 방법을 지칭함

Tacit acceptance

묵시적 수락

묵시적(Tacit) 수락은 채택된 협약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수락에 관한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되는 방법임

Consensus

총의

통상적으로 조직 및 기구에서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됨.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진중한 심의가 필요하며 국제기구는 총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